

# 코로나19 확산 대비 고용노동 민원절차 간소화 안내

## [근로자 및 구직자] 방문 민원절차 최소화, 지원요건 간소화

※ 고용센터 집체교육은 당분간 진행되지 않습니다.

사업명	안내문구
<p><b>실업급여</b></p>	<p>&lt; 공통 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구직급여 지급) 발열·기침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*에는 구직급여 수혜기간 중 고용센터 의무 출석 없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자가격리자, 확진자와 접촉한 자 뿐만 아니라, 발열·기침 등 코로나19 감염이 스스로 의심되는 자를 모두 포함</li> <li>* 다만, 법령상 최초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출석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○ (집체교육) 집체교육은 <b>당분간 진행되지 않으며</b>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온라인에서 강의 교육자료를 읽고 학습확인서를 제출하거나,</li> <li>②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받은 뒤에 학습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 <p>&lt; 확진자·자가격리 대상자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구직급여를 신청 前) 치료·격리기간 동안 <b>최대 3년간</b>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(구직급여 수혜 中) 치료·격리기간이 <b>7일 이상인</b> 경우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급하고, <b>7일 미만인</b>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b>&lt;대구·경북지역 특별 조치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직급여 수혜자 중 희망자(코로나19 감염 의심여부와 무관)는 수혜기간 중 고용센터에 의무 출석하는 날 없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구직급여 수혜 중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4주간 2회 실시해야 하는 재취업 활동이 4주 1회로 완화됩니다.</li> </ul> <p>⇒ 온라인(워크넷) 입사지원을 횡수 제한없이 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.</p> </div>
<p><b>취업성공 패키지</b></p>	<p>&lt; 공통 사항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초기상담) 최초 상담은 대면상담을 유지하되, 유선으로 상담일정을 변경·조정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(2회차 이후 상담) 취업패 참여자 중 희망자(코로나 19 감염 의심여부와 무관)는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p>&lt; 확진자·격리대상자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치료·격리기간 동안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
사업명	안내문구
<b>모성보호 급여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모성 보호 급여는 <b>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(고용보험시스템)이나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</b></li> </ul>
<b>취업지원 서비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면으로 실시하던 취업지원서비스 → <b>온라인(또는 유선)으로 제공합니다.</b></li> <li>○ 일자리 정보 → <b>전화·이메일,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</b> 구직자에게 안내합니다.</li> <li>○ 고용센터에서 수강하던 일부 취업특강 → <b>온라인으로 지원합니다</b></li> </ul>
<b>청년구직 활동지원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용센터 방문 없이 <b>온라인으로 예비교육을</b> 수강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<b>국민내일 배움카드</b>	<p>&lt; <b>공통 사항</b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훈련기관(공동훈련센터 포함) 및 사업주 대상 <b>집체훈련은 중단</b>을 권고 하였습니다.</li> <li>○ 고용센터 방문 없이 <b>온라인신청, 유선상담</b>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<b>훈련에 참여</b>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감염 우려로 인한 <b>훈련 중도 포기 시에는 계좌차감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.</b></li> </ul> <p>&lt; <b>확진자·자가격리 대상자 및 자녀돌봄 필요 시</b>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훈련 미참여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</b>합니다.</li> </ul>
<b>직업훈련 생계비대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기존 대부자)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<b>훈련이 중단</b>되더라도 중단기간 동안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</li> <li>○ (신규 대부신청자)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 <b>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</b>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<b>산업안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래와 같은 경우 <b>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</b>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 까지 유예합니다.</li> <li>① '폐기능 검사' 등 비말 발생 우려가 있는 검사가 검사항목에 포함된 경우</li> <li>② 건강진단 당일 <b>발열이나 호흡이 이상 증상</b>이 있는 경우</li> <li>○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<b>직무 교육</b>은 위기 경보 해제 후 6개월까지 유예합니다.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&lt;대구·경북지역 특별 조치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근로자의 <b>특수·배치전건강진단</b>의 실시를 유예합니다.</li> <li>* 유예 조치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특수건강검진 실시</li> </ul> </div>

## [사업주] 대면 절차 최소화 및 지원요건 간소화

사업명	안내 문구
<b>고용유지 지원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요건 완화)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, 코로나 19로 인해 예약 취소, 이용객 감소, 원자재 수급차질, 학원휴원 권고문 등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</li> <li>○ (절차 간소화)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전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,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업*으로 고용유지조치의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고용유지조치 후 3일 이내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small;">* 코로나19 확진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등으로 인한 고용유지조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fff9c4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margin: 0;"><b>&lt;대구·경북지역 특별 조치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①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, ② 고용유지조치 후 3일 이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</li> </ul> </div>
<b>근로기준 및 감독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특별연장근로)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인력, 마스크·소독약품 생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(사태가 급박할 경우는 사후승인 가능)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.</li> <li>○ (근로감독) ①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하지 않습니다. ② 그 외 모든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3.16 이후로 유예(상황에 따라 추가 연기 가능) 됩니다.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fff9c4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margin: 0;"><b>&lt;대구·경북지역 특별 조치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근로감독) 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○ (진정, 고소·고발 사건) 우선 2주간(2.24~3.6)은 출석조사를 실시하지 않고, 전화 및 우편조사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.</li> </ul> </div>
<b>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차출퇴근제,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무비 지원제도의 요건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.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small;">* (지원금액)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의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(주 3회 이상 활용 시 주당 10만원, 주1~2회 활용 시 주당 5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심사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승인 가능</li> <li>②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, 참여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</li> <li>③ 재택근무에 한하여 전자·기계적 근태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하여 근태관리 내역을 증빙하면 지원 가능</li> </ul>

사업명	안내 문구
<b>산업안전</b>	<p>○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 교육은 위기경보 해제 후 6개월까지 유예합니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ffffcc; padding: 5px;"> <p><b>&lt;대구·경북지역 특별 조치&gt;</b></p> <p>○ (산업안전 감독) 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 점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하지 않습니다.</p> <p>○ (진정, 고소·고발 사건) 우선 2주간(2.24~3.6)은 출석조사를 실시하지 않고, 전화 및 우편조사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.</p> <p>○ (보건관리 지도)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장 보건관리는 방문 지도를 원칙으로 하나, 아래의 경우 유선·서면지도가 가능합니다.</p> <p>① 사업장, 인근 사업장 및 지역에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이 요청한 경우</p> <p>② 보건관리전문기관 수행요원이 자가격리되어 사업장 방문이 불가한 경우</p> </div>
<b>외국인 고용허가제</b>	<p>○ (입국시기 조정)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입국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○ (체류기간 연장)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출국 예정인 중국, 태국, 베트남 국적 재입국 특례자의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ffffcc; padding: 5px;"> <p><b>&lt;대구·경북지역 특별 조치&gt;</b></p> <p>○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은 가급적 인터넷(EPS 홈페이지)을 통해 신청·발급하고,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민원은 팩스로 접수하면 담당자가 유선 확인 후 처리합니다.</p> </div>
<b>사회적기업</b>	<p>○ (지원금 선지급)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후지급하던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이 가능합니다.</p> <p>○ (지원 유지) 코로나19로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및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행정처분, 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여 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.</p>